

부산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4272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42726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55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 선고 2018. 9. 2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55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8. 5. 23. 접수 제101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강주혜

판사김지현

별지